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4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시 구의회에 하게 되는 ‘보고’를 ‘사전 보고’ 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위탁·재계약 시 ‘사전보고’하도록 규정 변경(안 제6조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상의 표현 및 맞춤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안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안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규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정비함.
- 안 제6조는 자치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현행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고”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영등포구 민간위탁 관리운영지침」(2022.1.)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시 실무적으로는 “사후보고”로 시행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 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
----------	-----

발의연월일: 2023. 5. .

발 의 자 : 김지연·신흥식·전승관

·임헌호·최인순 의원(5인)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구청장이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후 보고’로 운영하면 구의회의 실효적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구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구의회에 하는 보고를 ‘사전 보고’로 명시함(안 제6조제2항)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4. 28. ~ 5. 3.):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을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로,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고”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는”을 “사전 보고하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함에 있어”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u>이라한다</u>)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여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u>조사·검사·검정·관리</u>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 <u>각 호에 해당되는</u>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p>	<p>제 2 조 (정 의)</p> <p>----- <u>뜻은</u></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u>이라 한다</u>-----</p> <p>-----</p> <p>-----</p> <p>-----.</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p> <p>-----</p> <p>----- <u>조사·</u></p> <p><u>검사·검정·관리</u>업 무</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의</u> -----</p> <p>-----</p> <p>-----</p> <p>-----</p> <p>-----.</p>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에 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

-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 하고, -----

-----.

② -----

--- 사전 보고하는 -----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선정하는 경우 -----

-----.

1. ~ 5. (현행과 같음)